

MG해외여행보험 상품설명서

▣ 보장내용

● 기본계약

구분	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여행도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 후유장해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 3~100% 지급

● 선택계약

구분	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질병사망 및 80%이상 질병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 사망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 · 80%이상 후유장해시 고도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상 해 의 료 비	해외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입원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외래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처방조제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질 병 의 료 비	해외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입원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외래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처방조제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약국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

비 급 여	특약1 (도수, 체외충격, 증식)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 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로,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특약2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 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입·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보상
	특약3 (MRI/MRA)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에서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배상책임		여행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5만원)		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난, 침수, 파손등)	가입금액 한도 내 수리비나 대체비 등 실손해액 지급 (자기부담금 5만원공제, 보험의 목적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 보험금 20만원 한도)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 여행도중 피보험자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 중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여행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해당 사항에 따라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등 교통비(2명 분), 숙박비(2명X14박한도), 이송비용, 제작비(10만원 한 도)
항공기납치		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여행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비용전액을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가 사망한 경우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여행동반자 : 피보험자와 해외여행(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 포함)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 **패키지여행 : 여행사가 항공, 숙박, 여행지 등 모든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여행객은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여행상품	·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기지불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경우 손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증서는 전산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타자나 수기로 작성된 것은 유효하지 않으며, MG손해보험에서 조회 및 발급한 내용과 가입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MG손해보험에서 조회 및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보험 계약시 건강상태, 위험한 활동유무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